

(재)서울디자인재단/간송미술문화재단 공동전시 재계약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과 (재)간송미술문화재단(이하 '간송')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간송미술관 특별전(이하 '전시')을 공동 주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서는 '(재)서울디자인재단과 (재)간송미술문화재단의 업무협력협약서' 및 '(재)서울디자인재단과 (재)간송미술문화재단 공동전시 계약(2017.3.21. 계약종료)'을 기본으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시민에게 대한민국 창조디자인의 원형과 다양한 한국 문화재들을 공개하고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재단'과 '간송'이 각자의 의무와 권한을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시개요

가. 전시계약기간 : 2017.3.22.(1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2019.3.21. 까지 2년간으로 한다.

※ 단위 전시의 일정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

나. 전시장소 : DDP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다. 기본관람료 : 10,000원(전시작품의 내용 및 사항에 따라 협의 하에 변경 가능)

라. 전시작품 : 대한민국 창조디자인의 원형을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작품과 공동전시 기획전에 필요한 작품으로 하며, '간송'이 전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작품으로 전시 하되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물 선정이나 추가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가. '재단'과 '간송'은 상호 이해와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전시'의 성공을 위하여 전시, 시설운영, 보안안전, 보험 및 기금운영에 관하여 상호 긴밀한 협의 하에 본연의 의무를 다한다.

나. '간송'은 본 계약 상의 '간송'의 업무에 대한 대행을 (주)간송씨앤디(이하 '씨앤디')를 비롯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재단'과 사전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 업무 대행에 대해 적절한 대행 위임 범위 내에서 법률상 책임을 진다.

제4조 전시

가. '재단'의 의무

1) '재단'은 '전시' 공동 주최이며, 전시장 운영, 진행, 관리를 총괄한다.

2) 전시기간 중 '전시' 운영 업무(도슨트 프로그램, 부대행사 프로그램 운영, 작품보안 및 확인 등)를 담당한다. 단, 필요시 '간송'의 요청사항을 반영한다.

3) '전시'의 홍보, 마케팅을 공동 추진한다.

나. '간송'의 의무

1) '간송'은 '전시'의 공동 주최이며, 전시를 위한 연구·기획 및 전시 작품의 수급, 전시작품의 배치를 총괄적으로 주관한다.

2) 전시기간 중 '전시' 기획 및 연출(설치 및 철거 포함) 업무를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간송'이 부담한다.

3) '전시'의 홍보, 마케팅을 공동 추진한다.

4) 광고, 홍보물의 기획을 주관한다.

다.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새롭게 발생한 업무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 시설운영

가. '재단'의 의무

1) 공동전시를 위한 전시장 및 전시지원을 위한 부대시설(향온향습 수장시설, 연구공간 포함)을 제공한다.

2) 전시기간 중(2년)의 전시장 시설유지, 보수, 관리를 총괄한다.

3) 입장권(관람권) 관리 및 입장 수입 정산 업무를 총괄한다.

나. '간송'의 의무

1) 전시물의 연구·전시·교육을 위하여 전시장 및 전시지원을 위한 부대시설(향온향습 수장시설, 연구공간 포함)을 사용하고 관람객에게 연구·전시 결과물을 제공한다.

2) '간송'은 전시시설 및 전시물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협조한다.

다.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새롭게 발생한 업무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 보안안전

가. '재단'의 의무

1) 국보급 전시작품의 보안과 안전을 위하여 '간송'이 지정하는 보안·경비 업체를 선정하거나 '간송'이 직접 작품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간송'에 위임한다.

2) 작품의 보안·경비에 필요한 비용은 '재단'이 부담한다.

나. '간송'의 의무

1) 전시작품의 설치, 철수를 담당하고 전시작품의 관리를 책임진다.

2) 전시작품의 보안안전을 위하여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한다.

다.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새롭게 발생한 업무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7조 보험

가. 전시에 대한 보험은 '간송'과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가입한다.

나. 보험의 내용과 조건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보험기간은 전시기간(설치, 전시, 철수)과 운송기간, 보관기간을 포함한다.

- 2) 박물관 및 문화재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보험조건은 전위험담보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소방손해, 풍수재, 운송, 기타 잡위험 등 작품안전과 관련된 일체를 보장하는 포괄적 위험담보), 보험회사의 대위권 포기 및 구상권 없음 항목을 포함하여 '재단'과 '간송'의 공동전시의 운영·관리 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제8조 기금 조성 및 운영

가. '재단'과 '간송'은 공동전시를 개발·운영하는 역할 분담에 따라 합의된 사항에 따라 관람료를 '나'항에 의거해서 분배·운영한다.

나. '전시'에 대한 관람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집행은 아래와 같다.

- 1) 관람료 : 관람료는 지속적인 전시기획과 운영을 위하여 부과하며, 관람료는 유료관람객 (할인적용 대상자 포함)의 입장권으로 한다. 입장권의 정산에 관련한 업무는 '재단'이 총괄하고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전체 관람료 수입의 25%)을 공제한 금액을 전시를 위한 연구·기획 및 전시물 수급, 전시 연출 등을 진행할 기금으로 '간송'에 배분한다(전체 관람료 수입의 75%). 단, 전시 프로모션을 위해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전체 관람료 수입으로 본다.
- 2) 할인율 : 할인은 단체할인과 청소년, 어린이 및 군인, 만 65세이상, 장애인 4-6급을 대상으로 하며, 할인판매를 비롯한 전시 입장권 할인율은 '재단'과 '간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람요금표 별첨)
- 3) 무료관람 : 무료관람은 만 4세미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사상자 및 유족, 국가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1-3급(보호자 1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4) 문화상품 판매수입 : 문화상품 판매수입이란 인쇄물(소도록 포함) 및 문화상품 등의 판매수입을 말한다. 상품의 항목 및 기획·개발·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단'과 '씨앤디'가 협의해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지분율로 수입을 배분한다.
- 5) 초대권(무료관람권 포함) : 초대권 발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발행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초대권의 발행은 '재단'이 담당한다.

다. 정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 관련 업무는 '재단'이 총괄하고 정산 후, 14일 이내에 '간송'에 배분한다.

제9조 후원 및 협찬

가. '재단'과 '간송'은 후원 및 협찬기금 섭외를 추진할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유치기업 및 단체를 선정, 진행할 수 있다.

나. '전시'와 관련하여 '재단'과 '간송'에서 유치한 후원·협찬금(현물포함)은 유치한 측에 전액 수입으로 한다.

다. '전시'가 아닌 각 계약당사자의 파트너쉽으로 후원·협찬한 경우도 유치한 측에 전액 수입으로 한다. 단, '재단'에서 계약에 명시된 '전시' 이외의 후원·협찬사는 제외한다.

라. '재단'과 '간송'이 유치한 후원 및 협찬사에 대한 예우는 아래와 같이 한다.

- 1) '전시' 관련 각종 홍보/광고물(인쇄물, 영상, 사인물 등), 전시장 내외에 후원기업·기관·정부기관 고지(순서는 후원금의 액수에 따른다. 광고면수, 크기 등은 상호 협의한다.)
- 2) 후원·협찬사의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부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대서비스는 후원·협찬사를 위한 파티, 도슨트 해설 제공, 이벤트 등을 포함한다. 이때의 비용은 유치한 측에서 부담한다. 단, 작품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시설의 훼손 등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기타 후원·협찬사에 필요한 예우
- 4) 초대권이나 무료관람권(입장권)을 발급하는 경우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 및 행정처리

- 가. '재단'은 이번 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정 절차, 관련인 인허가 업무, 민원방지, 법률 검토, 행정규제 검토, 매출 및 수익발생에 따른 공동 세무, 회계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을 책임진다.
- 나. '재단'은 매월 초, 전월의 본 전시 관련 비용과 수익에 관한 회계정리 자료와 정산자료를 작성하여 '간송'에 제시하여야 하고, '간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계정리 자료와 정산 자료를 공개적으로 제공한다.

제11조 전시작품에 대한 관리 및 지적재산권

- 가. '간송'은 '재단'에 대하여 전시작품에 대한 명세와 정보를 제공한다.
- 나. '간송'은 '재단'에 제공한 전시작품에 대한 명세에 따른 전시작품에 대한 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시작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훼손되는 등 필요한 경우 '간송'의 판단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작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다. 전시와 관련하여 기획, 생산, 개발한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일체의 재산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간송'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재단'이 기획·개발·제작에 참여할 경우 참여 여부 및 콘텐츠 사용과 관련한 이익의 귀속, 배분에 한하여 협의 조정한다.
- 라. '재단'이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전시' 또는 '재단'의 업적과 관련한 홍보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간송'은 '재단'에 그 사용권을 허락한다.

제12조 계약 해지 및 배상책임

- 가. '재단'과 '간송'은 상대방이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즉시 계약해지 통지서를 송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전시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즉시 해지할 경우 양 당사자의 이미지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등 즉시 해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합리적인 시기에 계약을 해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과 '간송'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제13조 비밀의 유지

가. 본건의 계약 당사자는 본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얻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 및 본건 계약 체결내용에 대하여 본건 계약의 실행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본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관계자(당사자의 임직원 등 내부관계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의 자문기관, 시 및 시의회 등의 '재단' 관리·감독기관)에게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본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이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본건 계약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기밀성이 유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 의무 양도 금지

'재단'과 '간송'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제3조 나. 항의 경우는 제외)할 수 없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분쟁해결 및 적용법률

가. 본건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본건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한다.

다. 본건 계약의 해석을 위해서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며, 그 내용이 없는 경우 상관습법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재단'과 '간송'의 전반적인 합의사항을 포함하며, 따라서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본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추가적인 개별계약 내지 부속약정서로서 정할 수 있다. 추가적인 개별계약과 부속약정서는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써 일체를 이루며 당사자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나. 이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각 항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상호 협의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 *별첨 : 1. 관람요금표
2. '씨앤디' 위임장

2017년 2월 1일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 전 성 우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 이 근
